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66
----------	------

제출연월일 : 2022. 9. 3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2. 1. 4.)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21. 4. 2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공익제보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

다. 국민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안 제17조제4항, 제17조제5항)

라. 국민권익위가 이첩·송부한 공익제보에 대해 조사·수사결과 통보(안 제18조제4항)

마. 보상금·구조금·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1조제1항제3호라목, 제22조 제1항제3호, 제23조제1항4호)

바.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2년→3년) 연장(안 제21조제6항)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0. ~ 9. 19.(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 현재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는 위촉위원 성별 구성이 각각 50% 비율로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조례 개정 필요(안 제8조제1항)

현행안	자체개선안	검토사유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근거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익제보자를”을 “공익제보자 등을”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받는”을 “받거나 그 밖에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를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첩 받은”을 “이첩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불이익 조치”란”을 ““불이익조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공익 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사에”를 “조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제보 등”을 “공익제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공익제보자”를 각각 “공익제보자 등의”로 한다.

제6조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로, “보호관련”을 “보호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도정착”을 “제도 정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에 호선(互選)하며”를 “중에서 호선(互選)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분하고”를 “구분하고,”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위원이 꺾워된 경우 후임”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하며”를 “하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보가”를 “공익제보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익제보관련”을 “공익제보 관련”으로, “공익제보책임관”을 “공익제보 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제보책임관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를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제보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를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시장에게”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변호사”라”를 ““변호사”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으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제보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각 법률에 규정된 책임의 감면 등의 구체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보된”을 “공익제보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 있는”을 “권한있는”으로,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보된”을 “공익제보된”으로,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된 문서로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보”를 “공익제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보한”을 “공익제보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보”를 “공익제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를 “공익제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제보를 취하하고자 하는”을 “공익제보를 취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보가”를 “공익제보가”로, “제보내용”을 “공익제보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제21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제보한”을 “공익제보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이내에”를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패신고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신고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2조제1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월평균 액”을 “월평균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으로, “지급 받으면”을 “지급받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피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월평균 액”을 “월평

균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의 제목 “(보상금 등의 중복지급 금지)”를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구조금 또는 포상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산정하고”를 “산정하고,”로 한다.

제25조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 규정의”를 “등의 보호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례”를 각각 “이 조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로,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을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 공익제보 보호와 활성화에 참가하도록”을 “등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한다.

제31조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u>공익제보자를</u>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나. (생 략)</p> <p>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p> <p>라. (생 략)</p> <p>3. (생 략)</p> <p>4. “공익제보”란 시 소관사무와 관</p>	<p><u>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공익제보자 등을</u> ----- -----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받 <u>거나 그 밖에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u> -----</p> <p>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p>

련한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를 말한다.

5.·6. (생략)

7.“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8.“불이익 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9.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 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10.“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생략)

2. 시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의 임직원

3. (생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정

--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

5.·6. (현행과 같음)

7. -----
----- 이첩받은 -----
-----.

8. “불이익조치”란 -----

-----.

9. “공익제보자 등 -----
공익제보자 등의 -----

-----.

10. “공익제보자 등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 ---

-----.

11.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심의
3. (생략)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관련 교육훈련 및

----- 조사를 위해 -----

-.

② ----- 공익제보

-.

③ ----- 공익제보자 등의 -----
-----.

④ ----- 공익제보자 등의 -----
-----.

제6조(위원회의 설치) -----
----- 공익제보자 등 -----

-----.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공익제보자 등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 ---

----- 보호 관련 -----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사항

6. 공익제보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감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⑤ (생략)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꺾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5. 공익제보자 등-----

6. ----- 제도 정착-----

7. ----- 공익제보자 등의 -----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
--.

③ -----
-- 구분하고,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작
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관리하
여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센터의 업무) ① 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
호를 위한 업무

② 센터는 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
여부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게 10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조사여부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접수와 처리) ① (생략)

② 접수 후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 책임관) ① 시장은
공익제보관련 업무를 총괄할 공익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하며, -----
-----.

제12조(공익제보센터의 업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공익제보
자 등의 -----

② ----- 공익제보가 -----
-----.
-----.

제13조(접수와 처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공익제보자-----
-----.

제14조(공익제보 책임관) ① -----
공익제보 관련 ----- 공익제

제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책임관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조직 내 비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제보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생략)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제16조의2(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운영 등)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보 책임관-----.

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처리-----.

③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와-----.

제16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
부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운영 등) ① -----

----- “변호사”라 -----
-----.

② (생략)

제17조(공익제보자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해 조사받거나 협조한 자의 경우에도 같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① -
--- 공익제보자 등의 신분-----
-----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제보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제18조(공익제보의 조사) ① 시장은 제보된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을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유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자와 협의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공익제보의 종결) ① 공익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각 법률에 규정된 책임의 감면 등의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제보의 조사) ① -----
공익제보된 -----

-----.

② -----
----- 권한있는 -----
----- 공익제보자 -----
-----.

③ ----- 공익제보된 -----

----- 공익제보자 -----
-----.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공익제보의 종결) ① -----

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이미 조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제보인 경우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 책임관은 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보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2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

-----.

1. 공익제보-----

2. -----

----- 공익제보한 -----

3. ----- 공익제보-----

4. (현행과 같음)

② ----- 공익제보-----

-----.

제20조(공익제보의 취하) ① -----
----- 공익제보자-----
----- 공익제보를 취하하려는 -----
-----.

② ----- 공익제보가 -----
-- 공익제보 내용-----

-----.
----- 공익제보자-----
-----.

제21조(보상금) ① -----

에 한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
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 다.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
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
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
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
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

한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
환 등에 의한 환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익제보한 -----

④ -----

----- 이내에서 -----

⑤ (현행과 같음)

⑥ -----

청은 시의 수입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3. 원상회복 관련 재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 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 3년

⑦ -----
----- 부패
신고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금)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

4. -----

----- 월평균액

한다)

5. (생략)

②·③ (생략)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그 밖의 법률구제로써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제23조(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에 재산상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
----- 지급받으면 -----
-----.

⑤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
-- 손해배상청구권-----.

⑥ ----- 공익제보자 등의 -----

-----.

1. -----

----- 월평균액-----

2. 공익제보자 등-----

제23조(포상금) ① -----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4조(보상금 등의 중복지급 금지)

① 보상금과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제보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은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지급은 이미 받은 보상금을 빼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25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

-----.

1. ~ 3. (현행과 같음)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① ----- 구조금 또는 포상금-----

-----.
이 경우 공익제보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산정하고, -----
-----.

제25조(표창의 수여) ---- 공익제보자 등의 -----

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제26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3. (생략)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생략)
- ② (생략)

제27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 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제26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공익제보자 등의 -----

-----.

1. ----- 등의 보호 규정 -----

2. 3. (현행과 같음)
4. ----- 공익제보자 등의 -----

5. 공익제보자 등-----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

----- 이 조례-----
-----.

② -----

이 조례-----

-----.

③ (생략)

제28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공익제보 교육)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 교육프로그램을 시민과 기업 등에 보급하는 등, 공익제보 보호와 활성화에 참가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익제보 홍보)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1조(민원 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조성사업) ① ----- 공익제보자 등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조례-----
-----.

제29조(공익제보 교육) ① -----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제도-----
-----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교육-----

-----.

② -----
----- 등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

제30조(공익제보 홍보) ----- 공익제보자 등의 -----

-----.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민원 처리의 특례) ----- 공익제보자 등의 -----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증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⑦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0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목개정 2019. 4. 16.]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⑨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과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감사위원장 이 유 실